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94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유동수 · 박범계 · 민병덕
김현정 · 김용만 · 강준현
이강일 · 박상혁 · 김영진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평등원칙의 침해우려 등 자기주식 취득이 가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행동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특히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에까지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모회사가 부실을 초래할 정도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단 이를 자회사화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모회사를 합병하게 하여 그 채무까지 떠안게 하는 결과에 이르러, 우량한 자회사까지도 동반 부실화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면서 합병을 진행하여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합병 시의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1조의2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의2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그 다른 회사(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를 합병하는 경우

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를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자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모회사의 채무(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 및 그 채무의 상환을 위해 부담한 대환채무에 한한다)를 자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제3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會社の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진 會社(이하 “母會社”라 한다)

의”를 “모회사의”로, “그 다른 會社(이하 “子會社”라 한다)가”를 “자회사가”로 한다.

제360조의2제1항 전단 중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를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 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 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 기주식의 취득) ----- ----- ----- -----.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단서 신설>	1. ----- ----- <u>경우. 다만, 이 경우 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u> <u>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u> <u>니하다.</u>
<신 설>	<u>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u> <u>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u> <u>“완전모회사”라 한다)</u> <u>가 그 다른 회사(이하 “완</u> <u>전자회사”라 한다)를 합병</u> <u>하는 경우</u>
<신 설>	<u>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u> <u>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u> <u>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u> <u>“모회사”라 한다)를 그</u> <u>다른 회사(이하 “자회사”</u>

2. ~ 4. (생략) 第342條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 ① <u>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진 會社(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株式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會社(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取得할 수 없다.</u>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u>라 한다)가 합병하여, 자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모회사의 채무(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 및 그 채무의 상환을 위해 부담한 대환채무에 한한다)를 자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u> 2. ~ 4. (현행과 같음) 第342條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 ① <u>모회사의</u>----- ----- ----- ----- ---<u>자회사가</u>-----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u>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u> 될 수 있다. <u>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u> ② (생략)	① ----- ----- ----<u>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u> ----- --. <u><후단 삭제></u> ② (현행과 같음)
---	--